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기업거래, 가맹·유통)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공정거래위원회 일반임기제 5급(기업거래, 가맹·유통)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6월 26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1. 추가합격자 명단

채용직급	지원코드	채용분야	합격자 명단	근무예정부서
행정사무관 (일반임기제)	103	공정거래 사건 (기술유통, 지식재산권)	10350001(홍OO)	기업거래결합심사국 기술유통조사과(세종)

2. 안내사항

□ 추가합격자는 아래의 서류를 구비하여 2026. 7. 1.(수)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등기우편 접수(①~⑥) 및 전자메일 제출(⑦)

○ 등기우편접수 주소 : (우)30108 세종특별자치시 다솜3로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앞

○ 제출서류

① 신원진술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 <서식 1>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필수)

- ②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서식 2>
- ③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씩 총 2부.
 - 모두 주민등록번호 전부공개, 상세본으로 발급
- ④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1부. <서식 3>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에서 정한 의료기관의 장이 발행한 것
 -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 사진 1매 부착(필수)
- ⑤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1부. <서식 4>
- ⑥ 호봉확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및 첨부자료 1부. <서식 5>
- ⑦ 증명사진(3.5cm x 4.5cm) 전자파일 1부.
 - 채용담당자 전자메일(roundlikesun@korea.kr)로 제출

□ 기타 궁금한 사항은 공정거래위원회 운영지원과(☎044-200-4182)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신 원 진 술 서

※ 모든 기재사항은 빠짐없이 기재하고, 각 '□'칸에는 해당 사항에 ☒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	【사 진】 사진파일 가능 (3cm×4cm) · (3.5cm×4.5cm)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직장명 : 소재지 :		연락처	직장전화 : 휴대폰 : E-mail :	
* 가족은 사실혼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비속 등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을 포함합니다.					
가족관계	관계	성명	생년월일	직업 및 직책	거주지
부모 · 배우자 · 자녀					
* 해당 가족 구성원이 서식의 항목보다 많은 경우 별도 서류를 첨부합니다.					
배우자					
부모					
국적	본인	가족			
		배우자	자녀(성명)	자녀(성명)	자녀(성명)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대한민국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 복수국적
복수국적 또는 외국국적의 취득 경위	* 대한민국 국적 이외에 다른 나라의 국적을 보유한 경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합니다.				
재산	본인 및 배우자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미혼 자녀	부동산 :	만원,	동산 :	만원, 채무 : 만원

정당·사회 단체 활동	☐ 없음	단 체 명			기 간	직 책
	☐ 있음				. . ~ . .	
					. . ~ . .	
					. . ~ . .	
병 역	본 인	군 중	병 과	최종 계급	기 간	미필 사유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자녀(성명)				. . ~ . .	
학 력	학 교 명		기 간		전공 학과	학 위 소 재 지
			. . ~ . .			
			. . ~ . .			
			. . ~ . .			
			. . ~ . .			
			. . ~ . .			
* 학교는 고등학교부터 기재하고, '학위'란은 (전문)학사·석사·박사 또는 졸업·중퇴·수료 등으로 기재합니다.						
경 력 · 겸직 사항	기관 또는 업체명		기 간		직 책(직급)	상벌 관계(일자)
			. . ~ . .			
			. . ~ . .			
			. . ~ . .			
			. . ~ . .			
자격·면허						
해외 거주 이력	거주 국가		기 간		거주 목적	동반 가족
			. . ~ . .			
			. . ~ . .			
북한 거주 친족	관계	성 명	직업·직책		생년 및 거주지	지득 경위
위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허위로 기재할 경우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 받았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작 성 자 성명 인(서명 또는 날인)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가정보원, 국방부, 경찰청은 「보안업무규정」 제46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및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따라 신원조사 업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신원조사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가 준수해야 할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허가된 이용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출한 신원진술서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관리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 목	성명, 사진, 주민등록번호, 등록기준지, 주민등록지, 실거주지, 직장, 연락처, 가족 관계, 국적, 재산, 병역, 학력, 경력, 자격·면허, 해외거주 이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민감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정당·사회단체 경력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위 내용은 신원조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필수 정보에 해당하며, 그 내용에 관하여 **민감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른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없어 **임용(채용)·비밀취급인가 등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정보 처리 안내

항 목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목적	신원조사 및 사실관계의 확인
보유·이용 기간	2년

※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의2제1항제1호 및 「보안업무규정」 제46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 위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신청인(대리인):

(서명 또는 인)

20 년 월 일

(필요시) 법정대리인:

(서명 또는 인)

연락처:

210mm×297mm [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본인은 공직임용에 있어 신원조사기관이 본인에 대한 신원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과 개인정보(범죄경력 등 민감정보 포함. 이하 동일) 수집 목적 등 아래 유의사항을 이해하였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의 개인정보를 동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의 규정 등에 따라 신원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이에 따라, 개인정보 보유기관장은 원활한 신원조사를 위해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해당 신원조사기관에게 제공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 본인(가족 포함)이 서명한 동의서 복사본은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유의사항 (개인정보 수집 목적·관리방법, 정보제공 동의 거부 가능 고지)
■ 수집된 개인정보자료·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는 신원조사 목적으로만 사용되고, 「공공기록물관리법」에 따라 관리·폐기되며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 개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정보 제공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신원조사를 원활히 진행 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성명 (서명)

- 본인 및 가족 동의(자녀는 결혼·해외거주 등에 불문하고, 미성년은 본인대리 서명 가능)

구 분	성 명	생년월일	서 명	
			개인정보 제공 동의	민감정보 제공 동의
본인			자필서명	자필 서명
배우자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자녀			자필서명	해당없음

※ 신원조사를 위해 수집되는 개인정보 항목 (밑줄은 민감정보)

본 인(예시)	가 족(예시)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 공무원인사기록(행자부·인사처) ■ 주민·범죄경력·수사·수배 <u>조회자료</u>(경찰청)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 주민등록·가족관계등록부(행자부) ■ 출입국자료(법무부) ■ 토지·주택자료 및 자동차 등록원부(국토부) ■ 소득 및 개인·법인 사업자 자료(국세청) ■ 병적자료(병무청·기무사) ■ 금융기관 대출자료(한국신용정보원)

개인정보 보유기관장 귀하

<서식2>

■ [별지 제8호 서식]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 이용기관 명칭 : 경찰청(소속기관 포함)

2. 이용사무(이용목적) : 신원조사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행정정보명	연번	행정정보명
1	주민등록표 등·초본	6	고등학교졸업증명서
2	자동차등록원부(갑)	7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3	출입국에 관한사실 증명		
4	병적증명서		
5	검정고시합격증명서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 여권 ☐ 외국인등록 ☐ 운전면허) 번호 : _____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3>

■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4. 12. 3.>

(앞쪽)

신체검사용 채용 신체검사서

※ 뒤쪽의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① 구 분	② 시험실시 기관	③ 응시직명	④ 응시번호	⑤ 성 명	
⑥ 검사 시					
⑦ 재 사 용				⑧ 주민등록번호	

사 진
(3.5cm × 4.5cm)

※ 압인 또는 계인

검 사 내 용

키	cm	체 중	kg
허리둘레	cm	혈 압	
(교정)시력	좌: () 우: ()	색 신 (색 각)	(교정)청력 좌: () 우: ()
종 양 질 환		이 비 인 후 질 환	
호 흡 기 질 환		심 혈 관 질 환	
소 화 기 질 환 (간 질 환 포함)		신장/비뇨기계질환	
내 분 비 질 환		혈 액 질 환	
신 경 질 환		피 부 질 환	
근 골격계 질환		안 질 환	
정 신 질 환		흉 부 X선 검 사	
기 타			

위와 같이 검사했습니다.

년 월 일

검사자(담당의사)

(서명 또는 인)

검사 결과 합격 여부	[]합 격 []판 정 보 류	합격 사유	
판정보류 사유 (질환명 및 재신체검 사 필요 사유 등)	* 필요시 소견서 별도 첨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판정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검진기관의 장

(서명 또는 인)

유효기간	판정일부터 1년
------	----------

210mm×297mm[백상지(80g/㎡)]

유의사항 및 작성방법

[응시자]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에만 정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 가. ②란은 시험실시기관을 적어야 합니다.
(예: 인사혁신처, 국세청 등)
 - 나. ③란에는 응시한 직명을 적어야 합니다.
(예: 9급 세무직, 7급 전기직 등)
 - 다. ⑦란은 신체검사 후 1년 이내에 같은 직렬의 다른 시험에 응시하는 등의 사유로 다시 사용할 경우에 적어야 합니다.
- 응시자는 굵은 선 안쪽의 사항을 모두 적은 후에 신체검사서를 신분증(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을 포함합니다), 운전면허증, 여권 등)과 함께 신체검사를 실시하는 검진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 ※ 응시자는 본인 질환에 대해 별지 제2호서식의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검진기관]

- 응시자의 사진에는 반드시 압인(押印: 도장을 눌러 찍음) 또는 계인(鉤印: 도장을 걸어 찍음)을 해야 합니다.
- "검사 내용"란은 검사자가 검사 결과를 적고 확인해야 합니다.
 - 가. 검사 결과 기재의 예: 질병명(심부전증, 백혈병, 척수종양 등)을 적거나 "정상", "양호", "이상 없음" 등으로 적어야 합니다.
 - ※ 필수사항: 질병이 있는 경우 "합격" 또는 "불합격"과 관계없이 반드시 질병명을 적어야 합니다.
 - ※ 검진기관에서는 필요시 병원에서 건강검진을 위해 활용하고 있는 문진표를 채용 신체검사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나. 임신부나 홍부X선 검사를 받을 수 없는 특별한 건강상의 이유가 있는 응시자에 대해서는 홍부X선 검사를 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면제 사유를 홍부X선 검사 항목에 적습니다.
 - (작성 예시) 임신부인 경우 "임신으로 인해 홍부X선 검사 면제"라고 적습니다.
- "검사 결과 합격 여부"란 등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한 검진기관의 장이 판정 결과 등을 해당 []안에 "√"로 표시하고 그 사유 등을 적어야 합니다.
 - ※ 응시자가 본인 질환에 대해 전문의 소견서를 미리 제출한 경우 판정에 참고합니다.
 - 가. 합격 사유 기재의 예
 -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음
 - 0000 질환에 해당하나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예시: '만성골수성백혈병'에 해당하나 글리벡 복용 후 세포유전학적 완전 관해(官解)에 도달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함)
 - 나. 판정보류 사유 기재의 예
 - 0000 질환에 대해서는 000000한 이유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000000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 필요 (예시: 중추신경계 염증성 질환이 있는 경우로 팔다리가 쇠약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가능할지 의심되므로 신경과 분야 전문의의 재신체검사가 필요함)
 - ※ 응시자의 질환이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판단이 곤란한 상황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의가 재신체검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판정보류로 기재합니다.
- 검사 결과에 대한 판정은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서식 4>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3호 서식]

가족 채용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에 √ 표시를 합니다.

채용기관	기관명	채용방법	채용직위(직급)
	채용사유		
채용대상자 (확인인)	성명	주소	
	연락처	생년월일	채용 예정일

가족 채용 제한 확인사항

① 가족채용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자회사인 경우 모회사)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있는가?	[] 예 [] 아니오
② 예외 해당 여부	①에서 “예”에 답변한 경우,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직자의 가족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경우인가?	[] 예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1조에 따른 가족 채용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채용대상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유의사항

- ① “가족채용”의 가족은 「민법」 제779조에 따라 다음의 호를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서식 5>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장 [별지 제1호 서식]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

[] 공무원경력, [] 군복무경력, [] 유사경력

소속					직명			성명	
업체명	직종 및 직급	경 력 기 간 (연·월·일)			1주간 근무시간	면직일	승급제한사유 및 승급제한기간 (연·월·일)	특별승급사유 및 특별승급 (○급○호→○호)	
		부터	까지	기간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 및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임호봉의 획정과 새로운 경력을 합산하고자 경력증명서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26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호봉획정권자) 귀하

첨부서류	① 경력증명서 1부(채용 시 제출한 경력 제외, 모든 대상경력별) ② 4대보험 자격득실이력확인서(모든 대상경력별) ③ 소득금액증명(모든 대상경력별)
------	--